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68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: 2025년 4월 22일  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505호)과 한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544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, 급속충전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관련 규정(제7조의4제3항) 중 ‘전체 충전시설’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, 충전료 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축소함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,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.
- 나.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명시  
(안 제7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).
- 다.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 추가 및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  
(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).
- 라. 당연직 위원을 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에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(안 제9조제2항제1호).
- 마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(안 제9조제4항).

#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,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시장은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의5(충전의 제7조의4) 제3항제1호 중 “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”을 “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100분의 10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체 충전시설”을 “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”을 “위원회 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

4항 중 “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”을 “위원회의 회의는”으로,  
“개의회고”를 “개최하고”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7조의2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시장은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7조의2 · 제7조의3</u> (생 략)</p>	<p><u>제7조의3 · 제7조의4</u> (현행 제7조의2 및 제7조의3과 같음)</p>
<p><u>제7조의4(충전시설 설치) ① · ②</u> (생 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속충전시설의 설치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공이용시설: <u>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이상</u></p> <p>2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: <u>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</u></p>	<p><u>제7조의5(충전시설 설치) ① · ②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<u>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100분의 10 이상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</u>-----</p>

